

예 산 총 칙

2010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50,000,000	16,500,000
일반회계	455,400,000	13,662,000
특별회계	94,600,000	2,838,000
공기업특별회계	31,600,000	948,00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4,600,000	438,00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7,000,000	510,000
기타특별회계	63,000,000	1,890,000
수질개선특별회계	2,591,000	77,730
의료보호비특별회계	2,101,000	63,030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	770,000	23,100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특별회계	2,450,000	73,500
주택사업특별회계	760,000	22,800
농공지구(단지)조성관리특별회계	350,000	10,500
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1,355,000	40,650
치수사업특별회계	1,670,000	50,100
주차장운영특별회계	4,797,000	143,910
대지보상특별회계	820,000	24,600
기반시설관리특별회계	36,000	1,080
김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45,300,000	1,359,00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사업명세서는 "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 와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 채무부담행위조서 " 와 같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 계속비사업조서 " 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 명시이월사업조서 " 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022,88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30,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